12. 農地의 保全및利用에 關한 法律 施行令中 改正令

大統領令 第14,205號 1994. 4. 9

농지의 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전용허가의 제한)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를 할 때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안의 농지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외의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이의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과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당해 시설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금속제품 제조·가공시설
   나. 산업용화학제품 제조·가공시설
   라. 공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가공시설
   마. 석유정제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시설
   바. 가목 내지 마목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과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당해 시설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

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중 축산물공판장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산업용 화학제품제조시설

나. 기타 화학제품제조시설

다. 제1차금속제조시설

라. 가공금속제품·기계 및 장비 제조시설중 도금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마. 석유정제시설

바. 가죽 및 모피제품제조시설(가죽 및 모피를 이용하는 가공시설을 제외한다)

사. 섬유제조시설중 염색시설

아. 종이 및 담배제조시설중 종이제조시설

자. 가목 내지 아목외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제3조의2본문중 "그 목적사업이 종료된 후 일정기간내에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를 "그 목적사업에 3년이내의 기간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로 하고, 동조제1호중 "자재를"을 "물건을"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농한기에"를 삭제하고, 동조제3호중 "기타 토석 및 광물 채굴등의 목적으로 농한기에"를 "토석이나 광물채굴 및 물건의 지하매설등의 목적으로"로 하며, 동조제4호중 "간이양축시설과 간이양어장등 간이농어업용 시설로서 3년이내의 기간동안"을 "간이농어업용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의설치를 위하여"로 한다.

제4조중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농지관리위원회(이하 "농지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출된 신청서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농지관리위원회의 소위원회로 하여금 당해 신청서의 내용을 심사·확인하게 한 후 당해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주일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신청서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중 "제4조"를 "제4조제2항"으로, "시·도지사에게"를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농림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를 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농림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확인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의한 심사를 거친 후 그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이 아닌 녹지지역에 있어서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제3항중 "신고납입하게 할 수 있다."를 "신고납입하게 할 수 있으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시설용지로 농지전용의 허가등을 하는 경우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조성비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조성비의 납입의무가 결정되는 날부터 3년이내의 기간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4항단서중 "30일"을 "60일"로 하고, 동조제7항제9호중 "환경보전법의 규정에"를 "수질환경보전법에"로 하며,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농림수산부장관은 조성비중에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조성비의 납부일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중 "제8조제7항제1호 내지 제10호"를 "제8조제7항제1호 내지 제11호"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청문) 농림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3호를 삭제하며, 동항제4호 단서중 "제2호"를 "제1호"로 한다.

1.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 및 협의에 관한 권한과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대한 동의 및 승인에 관한 권한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권한
   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안의 3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의 전용
   나. 진흥지역밖의 1만제곱미터이상의 농지의 전용
2.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대한 협의에 관한 권한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권한
   가. 진흥지역안의 1만제곱미터이상의 농지의 전용
   나. 진흥지역밖의 5만제곱미터이상의 농지의 전용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 및 협의에 관한 권한과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대한 동의 및 승인에 관한 권한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권한
   가. 진흥지역안의 3천제곱미터미만의 농지의 전용
   나. 진흥지역밖의 1만제곱미터미만의 농지의 전용
   다. 농지의 일시전용
2.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대한 협의에 관한 권한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권한
   가. 진흥지역안의 1만제곱미터미만의 농지의 전용
   나. 진흥지역밖의 5만제곱미터미만의 농지의 전용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제1항 각호"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제1항각호와 농지의 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로 "동조제2항"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 개정이유 □

경제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농지전용에 관한 허가범위를 확대하고, 그 허가의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청문제도의 도입과 농지전용에 관한 권한위임의 범위확대 등을 통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현재 허용행위열거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규정을 제한행위 열거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농지전용의 허가대상의 범위를 확대함(영 제3조).

나. 토석채굴등을 위한 농지의 일시전용의 경우 현재 농한기에만 이를 허용하던 것을 농한기가 아닌 경우에도 허용하도록 하는 등 농지에 대한 일시전용의 범위를 확대함(영 제3조의2).

다.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대한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확인을 1주일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는 등 농지전용에 관한 허가절차를 간소화함(영 제4조).

라.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청문제도를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함(영 제11조의2).

마.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 대한 농지전용허가권한의 위임범위를 확대하여 농지전용절차를 간소화 함(영 제20조).

〈법제처 제공〉

성실시공 책임의식 공사튼튼 나라튼튼